

연세에는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가 있단걸?
그게 뭐야?

2000년 새터를 맞이하며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제12대 총학생회, 제21대 동아리 연합회, 제 30대 법과대
학생회, 문과대 여성모임 '모반', 여성주의 문화실험모임 '옴',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
법과대 성연구 모임 '동그래지는 온쪽이', 여성전문언론 '두입술'

연세에는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가 있단구?

그게 뭐야?

새터 반(反)성폭력

새터 반(反)성폭력

새터 반(反)성폭력

새터 성폭력 2000년 새터를 맞이하며

새터 반(反)성폭력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제12대 총여학생회, 제21대 동아리 연합회, 제 30대 법과대
학생회, 문과대 여성모임 '모반', 여성주의 문화실험모임 '옴',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
법과대 성연구 모임 '동그배지는 온쪽이', 여성전문언론 '두입술'

글쓰는 순서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 왜 필요한가요? ————— 2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 ————— 4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를 위한

새터 성폭력 모니터링팀이 꾸려집니다 ————— 11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에 대해

궁금한 몇 가지 ————— 12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 왜 필요한가요?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왜 생겼나요?

새내기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수님? 수업? 글쎄 그건 입학식 후 수업에만 참여한다면 그렇겠죠? 하지만 대학생활에서 수업만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생활할, 수업을 함께 들을 동기들 또는 선배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여러분의 생활을 함께 할 사람들을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바로 새터입니다. 새터는 여러분의 4년간의 생활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제까지 새터에서는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을 결정짓는 그 중요한 역할에 맞지 않게 잘못된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폭력이지요.

여러분들은 새터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선배들, 동기들과 친해지기 위해 재미있는 게임들을 하거나 촌극들을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함께 술을 마실 수도 있구요. 그러한 상황에서 '재미로, 친밀감을 위해'라는 명목아래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고, 혹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버릴 수도 있는 수많은 성폭력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배들에게 미움을 받을까, 동기들에게 비난 애라고 찍히진 않을까, 다들 재미있어 하는데 내가 괜히 분위기 썰렁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할 수가 있겠죠.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제정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모두가 함께 이야기하여 고쳐나갈 수 있는 틀 거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넘겨왔던 성폭력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잘못임을 인정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새터가 새내기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하는 시작인 것처럼 새터 반성폭력 내규도 연세에서 성폭력의 뿌리를 뽑는 시작입니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통해 여러분들이 성폭력에 대해서 당당하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이렇게 제정되었습니다

우선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에서 새터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례를 수집한 뒤, 필요한 내용들을 검토하여 새터 반성폭력 내규 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확대일꾼수련회(단대학생회 및 과/반학생회 일꾼들의 수련회)에서 공청회를 거친 뒤 2월 8일 확대운영위원회(단대 학생회 및 과/반 학생회 대표가 참가하는 최고 의결기구)의 만장일치로 새터 반성폭력 내규가 인준되었습니다.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

* 이 내규의 적용 시기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0.7기간부터 각 단체의 신입생 수련회가 모두 끝날때까지로 한다.

1. 목적

새터는 신입생이 가장 먼저 접하는 대학 문화이며, 이를 통해 대학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는 새터입에도, 여학우는 물론이고 남학우들도 음란 가요 등으로 대변되는 집단적 성폭력과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에 무방비한 채로 노출되었다. 진보적인 공간이라 여겨지는 대학에서의 이러한 성문화는 신입생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 방법들은 소극적이고 미비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화를 비판, 근절시키기 위해 객관적인 잣대로서 내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내규는 결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단순한 보복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해자의 처벌이나 단죄를 넘어서 왜곡되고 비뚤어진 공동체 성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성폭력을 예방함으로써 학생회 첫 사업인 새터에서 바람직한 대학문화를 보여주자는 것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전 교양이나 내규의 여론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성의식(혹은 성문화)을 지적해내고 올바른 성문화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동의하지 않은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뜻한다.

1) 집단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집단 대 집단인 경우, 혹은 집단 대 개인의 경우

① 집단적으로 어느 한 성을 비하하는 발언(언어폭력)을 하거나, 성행위, 성기들을 흥내내는 경우

예1) 조별로 촌극이나 장기자랑을 할 때

-96년 새터에서 모 단대에서는 장기자랑 시간에 남학생들이 성기 모양으로 스크럼을 짰 후, 맨 앞의 남학생이 암바사를 들고 있었다. 여학생이 암바사를 탁탁치며 그 당시 유행하던 광고 멘트를 말하자, 앞의 남학생은 암바사를 내뿜으며 사정하는 것을 흥내내었다.

-99년 새터에서 모 단대의 조별 촌극 시간에 '학교에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남녀가 불을 꺼놓고 '오빠, 힘들어요', '조금만 참아' 등의 성행위를 암시하는 말과 신음소리로 표현했다.

예2) 98년도 응원 오리엔테이션 때 아카라카 응원단 중 여학우가 빨간 옷을 입고 있자, 고대를 상징한다며, '벗어라'라고 외침.

② 새터행사에서 사회자가 어느 한 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③ 공동의 공간에서 음란물, 사진 등을 부착하는 행위

예) 새터에서 방이름을 정하고 그 게시물을 꾸밀 때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④ 술을 마실 때 언어폭력을 행사하거나 적대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예) 억지로 술을 먹이거나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경우, 또는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한 성을 임의로 배제시키려는 경우

⑤ 소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성행위를 몸짓 혹은 소리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예) '첫날 밤에' 등의 게임

⑥ 음란 가요를 부르는 경우
예) 정력가, 젓소부인 엘리제

2)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

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까이에서 앉게 하여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행위

② 신체적인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신체의 일부를 고의적으로 접촉
- 원치 않는데도 신체 일부를 애무하거나 문지르는 행위(입맞춤, 포옹)
-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암시, 요구하는 행위
- 손으로 성행위 등을 나타내는 몸짓을 하는 경우
- 기타 접촉, 성관계를 강요하는 일체의 물리적 혹은 신체적 행위

예) 98년 새터에서 모 단대에서는 신입생 남학생이 동기 여학우가 술에 취해 잘 때 옆에 누워 옷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③ 언어폭력을 하는 경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성적 활동, 성감각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성적으로 모욕하는 호칭의 사용
- 불쾌한 성적 농담(농담의 내용이 왜곡된 성의식을 담고 있거나, 강간 등을 주제로 하는 농담)
- 기타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끼거나 인격의 손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표현이 잠재된 언사

④ 적대적 환경 조성

- 음란하고 징그러운 눈빛, 결눈질하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
- 음란한 쪽지, 편지를 보내는 행위
-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느낄 상황을 조성

예) 벽으로 몰아붙여 팔에 가둔다거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
-화장실을 엿보거나 침입,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써놓는 경우

3. 의무

새터에 참여한 구성원은 새터 때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모든 구성원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대상

새터에 참가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5. 신고와 신고기구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상황을 공감하는 제 3자가 과(반)학생회, 단대학생회, 총여학생회, 신고함에 신고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의지와 그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신고인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

사건의 신고는 직접방문, 전화, 서면 등 가능한 방법으로 신고한다. 신고 기간은 새터 기간만이 아니라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신고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심신의 후유증을 딛고 신고를 결심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함으로 시효 규정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6. 피해자의 보호

대부분의 성폭력이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고 범죄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주장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또 다른 범주의 사회적 불이익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용모, 소속, 기타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기 힘들어 하는 경우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7. 동조자의 처벌

성폭력 대책위는 성폭력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할 때에는 그 동조자에 대하여 가해자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단, 이때의 동조자는 새터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다.

8.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 1) 각급 학생회는 과(반) 내에서 집단적 혹은 개인적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 논의 테이블을 제안해야 한다.
- 2) 신고함에 제보가 들어오거나 총여에 제보가 들어오면 총여학생회가 제보자가 되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 논의 테이블을 제안해야 한다.
- 3) 내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폭력 사건을 사건 대책위원회의

논의 테이블로 가져와야 한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 대책위의 논의 테이블로 가져오지 않는다.

9.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1) 새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이 일어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속된 단대 학생회(단대를 대표할 수 있는 1인) 혹은 동아리 연합회, 과반 학생회(과반을 대표할 수 있는 1인) 혹은 동아리 대표자, 총여학생회(총여를 대표하는 1인), 총학생회(총학을 대표하는 1인)가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 바로 구성되어야 한다.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의 소속이 다를 경우 쌍방의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각각의 1인(가해자 소속, 피해자 소속)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온다. 또, 과반 학생회가 없을 경우 단대 1인 혹은 동아리 연합회 1인만 들어온다(최소 3인-최대 6인).

2)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집행부를 둘 수 있다. 집행부의 구성은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집행부는 대책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3)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가해자 및 동조자의 처벌을 강제해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4)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및 사후처리
- 가해자와 동조자의 징계 및 재교육
- 피해자의 보상과 치료
- 사건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피해자가 원치 않을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5) 성폭력 사건 대책위 위원 중 사건을 누설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자에 한해서 위원직을 박탈한다.

6) 집단적 혹은 개인적 성폭력 사건 해결 방안의 원칙

- ① 성폭력 사건 대책위의 논의 테이블로 가져와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징계에 대해서 논의한다.
- ② 공식적인 실명사과(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혹은 전체를 대상으로)를 받아 내야 하고 그것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다.
- 과반장, 단대장의 차원에서 사건을 은폐시키려 한 경우 그에 대한 사과 대자보를 붙여야 한다.
- ③ 해결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 ④ 성폭력 사건 대책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처벌을 가해자 및 동조자에게 가한다.

10. 징계내용

가해자 및 동조자에 대한 징계는 성폭력 사건 대책위에서 내린다. 가해자 및 동조자에 대한 징계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가해자 및 동조자들을 대상으로 왜곡된 성문화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세미나
- 피해자 대한 사과, 자신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명시한 사과 대자보
-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을 듣는 재교육
- 성폭력 상담소 등의 외부단체에서 일정기간 봉사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일정기간 가해자 접근 금지

11. 개정

개정안건 상정과 의결은 확대운영위원회의 회칙에 따른다.

* 위 새터 내규는 2000년 2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를 위한

새터 성폭력 모니터링팀이 꾸려집니다

이번 새터에서 꾸려지는 모니터링 팀은 새터에 참가하는 각 학생회의 선배들로 꾸려집니다. 새터 내규가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제정된 것이어서 각 학생회의 사정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니터링 팀은 각 학생회에서 1년 이상 생활한 사람들로 꾸려지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모니터링 팀은 새터에서 뿐만 아니라 새터 이후의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에서도 모니터링을 담당하게 됩니다. 모니터링 팀이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새터에서 지내면서 모니터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접어두셔도 될 것 같네요.

MONITORING
TEAM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에 대해 궁금한 몇 가지

Q 내규에 나와 있는 성폭력 행위들은 굉장히 애매하고 사소한 것들까지 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학우를 바라보는 것이나 술을 여러 번 권하는 것 같은 것도 성폭력이라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면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A 내규에 나와 있는 예들이 모든 경우에 성폭력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들도 때에 따라서는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같은 말이나 행동이라도 그 일이 일어나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성폭력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학우를 바라보는 것은 성폭력이 아니지만 여학우의 몸을 아래위로 반복적으로 훑어보는 것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적 맥락입니다. 물론 각자가 자신의 일상적인 말과 행동이 혹시 성폭력이 되지 않는지 생각해보고 서로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겠지요.

Q 성적 농담이나 촌극 등에서의 성행위 흉내, 첫날밤에 게임 등이 성폭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모든 성적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A 모든 성적인 표현이나 이야기를 금하는 도덕적 엄숙주의의 발상이 아닙니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상황적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가 중요한 것이겠지요. 성적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하는 성적인 이야기나 표현들이 어떠한 것이었나 생각해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성적인 이야기로 한 성만 즐거워지고 한 성은 배제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Q 새터는 새내기들과 선배들이 뭉쳐 끈끈한 관계를 만들고 하나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혹시 새터 내규로 인해 분위기가 서먹해지지는 않을까요?

A 모두가 즐거워야 할 새터에서 성폭력이 일어난다면 그 이상 서먹한 분위기가 도 있을까요. '공동체의 일체' 때문에 성폭력이 숨겨져야 한다면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닐까요. 성폭력은 특별히 민감한 소수만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다수의 끈끈한 관계유지를 위해 소수를 희생해서는 안되겠지요. 꼭 음란 가요를 부르고 성에 대한 농담을 해야만 분위기가 즐거워지고 그런 것을 하지 못하면 분위기가 서먹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하면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새터 내규에서는 가해자의 공개실명사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지는 않을까요?

성폭력이 공동체 내의 왜곡된 성문화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요. 그렇게 본다면 가해자도 결국 잘못된 사회구조의 또다른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 사회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명사과자보는 가해자에 대한 단순한 단죄가 아니라 성폭력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 전체에 사과하고 성폭력을 공동체적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최소한의 표시이겠지요. 성폭력은 특별한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구나 성폭력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명사과자보를 보고 '이런 성폭력범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겠지요.